

『구미시 농업·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미경 의원 외 6명

2. 제안이유

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미시 농업인의 영농능력을 고취시켜 농업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“교육훈련사업” 정의 신설(안 제2조제9호)

나.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위탁 근거 신설(안 제8조3항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, 「농촌진흥법」,
「농촌진흥법 시행령」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○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3. 1. 3. ~ 1. 8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농업·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교육훈련사업을 위탁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- 상위법에 근거하여 교육훈련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위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
- 아울러,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